

#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출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4. 6. 30(2004. 6. 3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III. 근거법령 :

-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
-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

IV. 검토내용

## 1. 제안이유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·공포(2002. 12. 26 대통령제 17,816호)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하여는 이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(2003. 6. 23. 공포)토록하고 있음.
- 따라서 현행 이천시건축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이천시건축조례 제49조(건폐율) 규정을 삭제.
- 이천시건축조례 제50조(용적율) 규정을 삭제.

## 3. 검토의견

-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,816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건폐율 및 용적율을 이천시도시계획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고,
- 현행 이천시건축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